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다년간의 생가 등 주변 시설물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적·효율적 운영관리를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운영토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6)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9조
- 7)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다. 위탁사무

- 1) 생가 및 생가 주변 시설물 관리
- 2) 생가 및 민족중흥관 방문객 안내, 해설
- 3) 기념품 판매소 및 보릿고개체험장 운영
- 4) 박정희대통령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등

라. 시설개요

- 1)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07 일원
- 2) 규 모 : 8,297.07㎡(건축물 : 8동, 1,609.07㎡)
- 3) 시설현황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시설명		면적(규모)	시설구조	비 고
생가	생가	37.02㎡	초가	1916년 건립
	안채	102.48㎡	접견실	1964년 개조
	추모관	57.3㎡	*당초 접견실 목적	
	수행원대기소	27.44㎡		
민족중흥관		1,207.62㎡	철근콘크리트구조	2013.1.15. 개관
보릿고개체험장		63.82㎡	토조	2009.7.1. 개점
박대통령동상		높이 5m, 진입로 150m	청동(동 8, 주석 2)	2011.11.14. 준공
새마을역군동상		면적 50㎡, 높이 2.5m	체험장 앞 삼각지	2010. 9월 준공
새마을중흥비		1기(높이 4m)	오석(대형주차장내)	2000년 건립
중흥정		27㎡	팔각정	1998년 건립
야외화장실		2동(32.75㎡, 80.64㎡)	기와지붕	1998년 / 2014년
주차장		5,289㎡	80대(대형11대)	1999년 건립
방문객쉼터		1,322㎡	파고라, 벤치	2001년 건립

마.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이전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최초위탁 : 2003년)

#### 바. 위탁조건

- 1)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2)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아. 소요예산 : 1,797,235천원(3년간)

자. 성과평가결과 : 민간위탁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부서평가 결과 반영

### 3. 부서의견

- 해당 사무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능률성과 효과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민족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생가(경상북도지정기념물제86호) 행사, 방문객 편의 제공, 업적보존, 홍보 등의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다년간의 생가 등 주변 시설물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사업의 연속성,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을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성과보고서
- 2023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 사진대지 및 관계법령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본예산 세출요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가. 3년간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1,797,235천원임
  - 나. 인건비 등 매년 인상률 5%로 반영함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합계
세출	570,098	598,603	628,534	1,797,235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합계
국비	-	-	-	-
도비	-	-	-	-
시비	570,098	598,603	628,534	1,797,235
민간	-	-	-	-
기타	-	-	-	-
합계	570,098	598,603	628,534	1,797,235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상승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리팀 장정한(054-480-493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사무명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금	1,797,235천원(3년간)		
위탁금 세부내역			
기간	항목	계(천원)	산출기초
2024년 기준	합계	570,098 (100%)	
	인건비	425,898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직원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 247,953,000원(9명)</li> <li>- 수당(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등) : 102,602,000원</li> <li>- 퇴직금 및 보험료 : 59,227,000원</li> </ul> </li> <li>○ 기간제근로자 보수 : 16,116,000원</li> </ul>
	운영비	127,50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용비(복사용지, 토너 등) : 22,600,000원</li> <li>- 임차료(복합기, 정수기 등) : 9,240,000원</li> <li>- 피복비(근무복) : 2,250,000원</li> </ul> </li> <li>○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요금및제세(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 78,600,000원</li> <li>- 연료비(난방비 등) : 4,710,000원</li> <li>- 시설장비유지비(생가 유지보수 등) : 10,100,000원</li> </ul> </li> </ul>
	사업비	16,7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비 : 3,000,000원</li> <li>○ 업무추진비 : 3,600,000원</li> <li>○ 재료비(꽃, 비료 구입 등) : 10,100,000원</li> </ul>

※ 2025년, 2026년은 전년 대비 5% 인상률 기준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성과보고서

## I. 평가개요

- 관련근거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 관련공문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2881(2023.7.14.)호
- 평가기간 : 2021. 1. 1. ~ 2023. 6. 30.
- 평가시기 : 2023. 7. 3. ~ 2023. 7. 14.
- 평가내용 :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 평가대상 :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이사장 : 박동진)
- 소관부서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평가자 : 2명(관리팀장, 업무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
- 평가항목 : 공통분야 4개 항목, 개별분야 4개 항목

부문	공통분야(50점)				개별분야(50점)			
	사업 계획	예산 관리	성과 관리	인력 관리	기념 사업	시설·물품 관리	수익 관리	이용자 관리
배점(100)	10	20	10	10	10	15	15	10
평점(92)	8	20	8	10	8	15	15	8

## II. 평가결과

- 평가점수 : 92점(100점 만점)
- 평가내역 : 성과평가 총괄표
- 총 평
  - 다년간의 생가 등 주변 시설물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시설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적·효율적 운영관리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함
  - 위수탁 협약 및 사업계획에 의거 시설물 등 관리·운영 우수

# 심의결과 공문

(2023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 관련 공문

새 희망 구미 시대



# 구 미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부서에서는 의회동의, 예산편성 등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21건) : 적정 17건, 조건부 적정 2건, 보류 2건(※ 불임 참조)

불임 심의결과 1부. 끝..

## 구 미 시 장

**관인생략**

수신자 미래도시전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노동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선산출장소장(농업정책과장),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장,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

주우관	이수범	인사팀장	김혜진	총무과장	전결 2023. 9. 11. 박노훈
합조사					
시행	총무과-28163	(2023. 9. 11.)	접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3891	(2023. 9. 11.)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송정동)			/ www.gumi.go.kr
전화번호	054-480-6773	팩스번호 054-480-6759	/ hsb1210k@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잠그GO!

□ 심의결과

## 2023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 심의대상 : 21건

○ 적정 17건, 조건부적정 2건, 보류 2건

연번	사업명	부서	심의결과	비고
1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미래도시전략과	적정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미래도시전략과	적정	
3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교육청소년과	적정	
4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노동복지과	보류	
5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쉼터) 운영	노동복지과	적정	
6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일자리경제과	적정	
7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구축·운영	일자리경제과	적정	
8	구미시취업지원센터 운영	일자리경제과	적정	
9	2024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일자리경제과	적정	
10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문화예술과	적정	
1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장애인과	적정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담비 및 교통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적정	
13	특가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운영지원	노인장애인과	적정	
14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노인장애인과	조건부적정	조례제정 후 시행
15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노인장애인과	조건부적정	조례제정 후 시행
16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노인장애인과	적정	
17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환경관리과	적정	
18	구미시 남은음식물 시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자원순환과	적정	
19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농업정책과	보류	
20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적정	
21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적정	

# 사진대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 □ 위치도



## □ 조감도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구성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입 안 자	관 장	정 명 자
	팀 장	정 의 재
	담 당 자	장 정 한 (480-4933)